

## 기술표준

# 금년도 기술이전·사업화에 764억 투입

## 기술시장 활성화 위해 기술이전조직 역량강화, 특허신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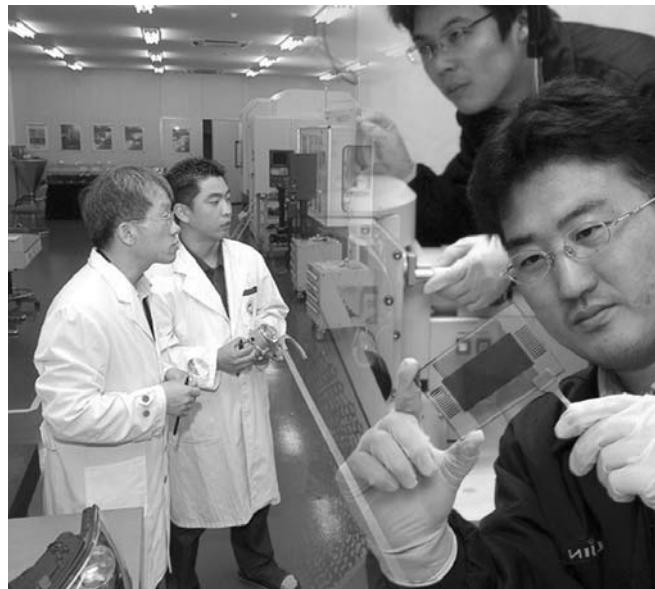
2007년도 각 부처는 R&D 성과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5.4% 증가한 764억원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기술이전조직지원, 기술경영인력양성 등 기술이전촉진사업에 310억원, 기술평가기반구축, 신기술창업 지원 등 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454억원 등이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와 연계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R&BD)이 11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중점추진방안으로 우선, 공공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해 기술이전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공급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조직 활성화방안) 우선,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술료 수입을 배분(순수입의 5%)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기술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사업'과 '기술거래 에스크로우 제도'도 시범도입한다.

기술분야별 '기술수요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공급자의 부족한 마케팅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기술기획·평가, 특허관리, 기술거래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전문기관이 미활용특허를 집중 관리하고, 이전·사업화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특허신탁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신탁제도 도입방안) 기술분야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특허신탁센터'를 지정하여, 대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미활용특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연차)료 지원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가격



범위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유상이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신기술제품(NEP) 공공구매도 실제 공공기관에서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제도개선 방안)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포상실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함과 동시에, 회계법인을 통해 구매실태를 심층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참여정부 이후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설치, 광역기술이전센터(RTTC) 설치 등 전국적 규모의 기술이전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공공기술의 민간이전율이 참여정부 초기 14.1%에서 20.7%로 증가하고, 기술료수입도 168억원에서 687억원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혁신 친화적인 금융시스템 조성을 위해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평가기반 마련되고, 기술금융 공급규모도 참여정부 초기 0.5조원에서 올해 3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도 확충되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조1천억원,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1,823억원, 조달우수제품 공공구매 3,409억원 등 총 1조6천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산업자원부는 기술혁신의 가속화, 융·복합화 심화로 선진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전략(Open Innovation) 추세에서 우리 기업이 내부 R&D 투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내 기술시장을 지속 육성하여 기업들이 우수기술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기술이전조직 활성화 방안 (요약)

### 1.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율, 기술료 수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기술이전조직의 역량은 아직까지 미흡
- “기술공급자 – 수요자”간 유기적 연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조직의 역량을 강화
- (기술거래사) 338명의 기술거래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기술거래 활동은 미미
- 기술거래기관, TLO 등과의 연결고리가 없어 거래업무 수행에 한계
- 단순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거래사 자격에 대한 시장의 신뢰확보가 곤란

### 2. 활성화 방안

#### ① 기술중개역량 강화

- 기술공급자 – 중개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TLO와 기술거래기관간 전략적 제휴 지원
- 기술거래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별조사 비용을 지원
- 공공부문 기술이전시장에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적극 참여
- 기술거래기관의 성공모델 창출을 통해 민간기관의 참여를 적극 확대 (현재 6개인 민간기술거래기관을 ‘10년까지

30개로 확대)

공급자 – 중개자 – 수요자간 종합적인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촉진

- ◇ 공급자 : 기술이전조직(TLO) 역량 강화, 자립기반조성
- ◇ 중개자 : 기술거래기관 · 거래사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중개자 역할 부여
- ◇ 수요자 : 수요자 중심 거래환경조성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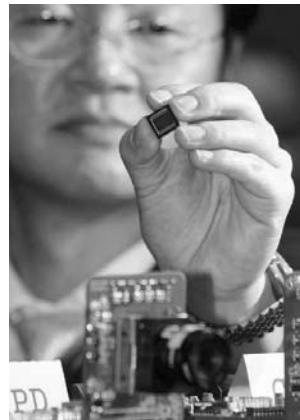
#### ● 과거실적 중심의 기술거래기관 지정요건을 대폭 개선

- 시장진입 : 진입은 쉽도록 거래기관 심사기준을 합리화
- 자격유지 : 지정이후 거래실적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
- 기술거래사의 기능 및 수요확대를 추진하고 단계별로 선발시스템을 개편
- 1단계 : 현행 등록제도는 유지하되 소정의 의무교육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 ('07년 상반기중 제도개선)
- 2단계 : 기술거래사에 대한 수요의 질과 양을 평가한 후 기술거래사 선별시험으로 전환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 ②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의 역량 강화

- TLO 우수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축지원
- TLO 소속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 전문교육 등을 지원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해서도 기술료수입을 배분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유도 (기술료 순수입액의 5%)
- TLO 수익구조 개선 추진
- 협상력이 부족한 TLO를 대신하여 경상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사업 지원

## 기술표준

- 기존 ‘특허경비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TLO에 대한 특허법률 자문서비스 제공 및 특허수수료 인하 유도



- Connect Korea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시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10년까지 40개의 선도TLO를 양성)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Score Card 작성·발표
- 공공연구기관별 기술이전 실적과 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
- 기관 스스로 기술이전·사업화의 수준과 역량을 파악하고 타기관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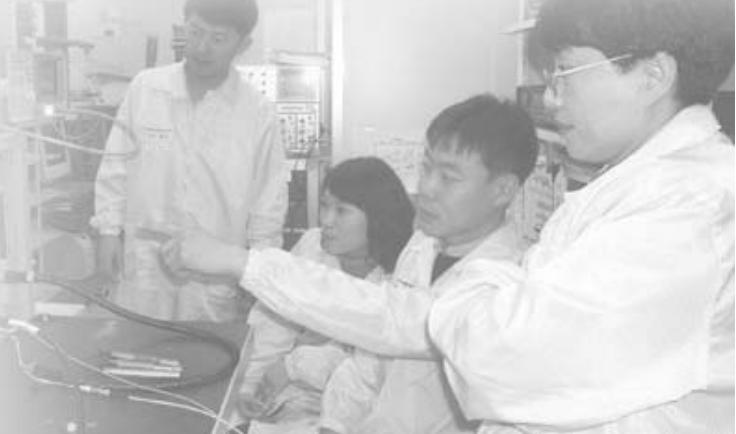
### ③ 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기반 구축

-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거래시장(NTB)\*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National Technology Bank, [www.ntb.or.kr](http://www.ntb.or.kr))
- 수요자인 기업이 NTB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정보를 다양화하고 수요자 서비스를 강화

- 수요자의 희망기술 검색기록을 기술공급자에게 제공하여 공급자 - 수요자간 직접접촉 및 거래를 지원

- 현재 주1회 개최하는 오프라인 거래시장(테크마트)을 전문화·대형화하여 수요자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
- 기술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거래 에스크로우 제도’를 시범도입
- 기술거래 금액을 제3자에 기탁하고, 계약이행여부 최종 확인 후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을 지급

- 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핵심기술별 기술이전 수요자 컨소시엄을 구성·운영
- 기술이전의 최대 수요자그룹인 기업부설 연구소와의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 제고



## 미활용특허 사업화 촉진방안

### 1. 도입배경

- 국가 R&D 투입의 증가에 따라 특허창출이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활용 특허비율이 지속 증가추세
- 각국의 지식재산정책이 창출·보호 중심에서 활용증면이 강조되면서, 미활용 특허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투자기법 도입
- 미활용특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통합적인 기술시장을 형성하고, 관련주체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수요-공급이 연계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제도의 도입 필요

### 2. 특허신탁의 의의

- 특허신탁은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전문기관이 맡아 특허보호 및 이전·사업화 등의 업무를 대행
- 각 기술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 특허를 전문기관이 통합 관리하여 수요-공급자간 탐색·거래비용 절감
-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거래,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협상력,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의 효율성 제고

### 3. 향후 추진계획

#### - 현행 신탁업법상 문제점 -

- 현행 신탁업법에서 신탁재산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10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춘 신탁 회사(영리법인)만이 신탁업 수행 가능
- 수익성이 낮고 기술평가·거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활용 특허신탁을 담당할 신탁회사는 없어 특허신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법), 프로그램위탁관리업(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에 준하여 신탁업법 예외로 인정

- '기술이전촉진법'에 '특허신탁관리업' 근거규정 신설
- '신탁업법'의 예외로서 비영리 법인(기관)에 의한 특허 신탁관리업을 허용
- 기술·특허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허신탁기관 지정 (가칭 국가특허신탁센터)
- 민간 기술거래 네트워크(기술거래사·거래기관 등)을 중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비영리 공공기관의 한계를 보완
- 대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 수탁하여 통합적인 특허관리시스템 구축

#### - 특허신탁기관의 업무모델 -

- 특허신탁기관은 대기업·대학·출연(연) 등과 기술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특허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업종별·등급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온·오프라인 기술거래시장, 민간 기술거래기관·거래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접 마케팅을 통해 거래협상 및 이전계약 체결
- 기술료 징수·관리, 특허침해소송대행 등 특허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기술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특허신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특허증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연차)료 감면·지원 추진
-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탁 특허가 이전될 수 있도록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07.4월)
- 기술이전 후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연계 지원
- 정부 R&D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개발자금 등 연계지원
- 기보 「기술이전보증」\*, 산업은행 「기술거래금융」\*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 추진

## 2007년도 기술이전·사업화촉진 계획

### 1. 2006년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실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산자부, 과기부)
- 기술거래시장운영, 기술이전정보 DB구축, 인력양성,

Connect Korea 등 기술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지속 추진

-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평가 실시
- 국가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개발 2개 사업 323개 과제(산자부, 4.7억원),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로봇분야 신규과제(정통부, 0.2억원)에 대해 경제성 평가 실시

## 기술표준

- 신기술·제품 인증제도 통합
  - 각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2개 인증제도로 통합('06.1월)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 유망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투자펀드' 조성
    - '06년 300억원을 조성하여 6개 기업에 104억원 투자
  - 기술평가기관·은행·정부간 협약을 통해 기술평가를 토대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혁신형 中企 기술금융' 실시('06.8월~)
  
  - 신기술 창업보육(TBI) 및 기술창업 패키지 사업 운영
  -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실시('06년 80억원, 산자부)
  - '기술창업 패키지 사업' 운영('06년 16억원, 중기청)
2. 2007년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계획
- ① 성과중심의 기술이전·거래 기반 구축
    -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 역량을 지속 강화하되, 기술이전실적 향상 등 성과관리 강화(Connect Korea 사업)
    - 특허관리·경영 능력 강화 및 수익구조 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자립기반 구축
  
    - 기술이전·거래시스템(온·오프라인 시장 등)은 단순 기반구축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기술이전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에스크로우(Escrow)' 시범사업 실시('07년 10여건 대상)
      - 특허기술 종합정보시스템(IP mart) 등을 통한 기술거래 시장 확대 추진('07년 12억, 특허청)
      - 보건산업기술의 평가, Bio Korea 개최 및 IT 기술의 아버지시장(technomart) 운영 등('07년 복지부: 4.3억, 정통부: 30.5억)
  - 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강화
    - 정책자금(모태펀드) 용자를 지속 확대하고(2,701억→3,065억),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
  
    -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강화 및 평가모델 개선
      - 경제성 평가 및 연구성과 추적평가 확대실시(각 부처)
      -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 확대(각 부처)
      - 객관성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델 개발완료(07년 6억, 산자부)
  
    - 민간 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R&BD 개선)
      - 지원 예산 확대('06년 55억 → '07년 110억, 산자부)
  
    - 신기술보육사업(TBI)을 통해 창업활성화 유도('07년 80억)
      - 기술창업패키지사업 지원('07년 13.5억, 중기청)
  
    - 출연研의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07년 8억원, 과기부)
    - 기술을 사업화하여 생산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공공구매 제도)
  
    - 효과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
      -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처간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방안 검토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산자부 등)
        - 현 심의회의 정책연계기능 제고를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등

## 기술표준

##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요약)

### 1.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개발·생산한 우수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

#### □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중 NEP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
-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380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계
44	248	16	72	380

※ 대상 공공기관 수 : ('04) 33개 → ('05) 473개 → ('06 하반기) 380개

#### □ '06년 상반기 구매실적 (연간 구매실적은 3월까지 취합)

(개, 백만원)

'04연간	'05상반기	'05연간	'06상반기
29,542	55,870	182,269	69,759

#### □ 평가 및 제도개선 필요성

- 구매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추진실적 분석 및 인증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할 때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

### 2. 주요 제도개선과제

- ① 공공기관 구매편의 제고를 위한 구매시스템 개선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손쉽게 NEP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 구매시스템과 연계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적극 선호

- 산자부 NEP사이트([www.buynp.or.kr](http://www.buynp.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shopping.g2b.go.kr](http://shopping.g2b.go.kr))을 연계하여 제품검색 및 바로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 ②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관리 강화

-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훈·포장 확대 (현행 6개 → 18개)

- 실적우수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선진국 공공구매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미국 SBA 구매지원관 프로그램 등)

#### □ 구매실적 저조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NEP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 집중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감사원 및 상급 감독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별로 NEP 공공구매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구매 담당자에 대한 제도안내 및 실무교육 지속 실시

#### ③ NEP 인증업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속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

-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제도운영상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문의 및 불만사항을 처리
- 단순민원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즉시 처리하고 복잡민원 등에 대해서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에 상정·처리

#### □ NEP 인증업체 마케팅 활동 지원

- 인증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케팅 대상 공공기관에 제도설명 및 안내공문을 발송 (분기별 수요조사)
- 우리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촉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 참여를 독려 (연 1회)